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각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8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대기업 추가(곽규택의원안)	2

I. 개요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6.
- (3) 회 부 일 : 2024. 1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대기업 추가(과규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제25조의7)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u>중소·중견기업</u>	☐ 적용대상: <u>대기업, 중소·중견기업</u>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3%	☐ (현행과 같음)
☐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 과규택의원안 2024. 11. 6. 발의(의안번호 5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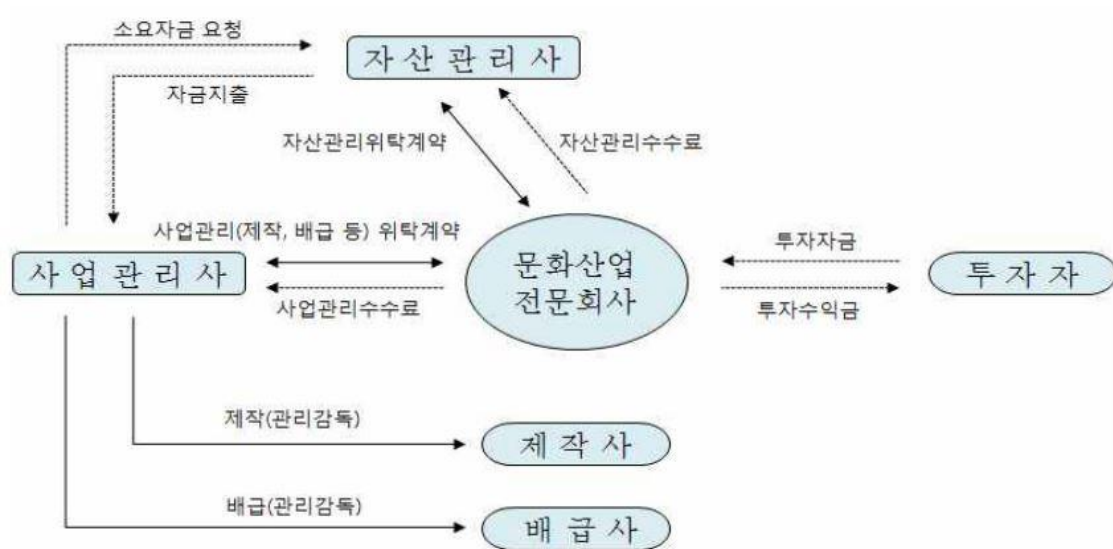
☐ 개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¹⁾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

1)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함.

통상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²⁾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자료: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 조달의 다변화, 제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기존 투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자

2)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금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의 자금과 혼합되어 자금흐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존재하였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는 매년 1회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321개의 전문회사가 운영 중임.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3%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국내 콘텐츠 기업(114,739개) 중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이고³⁾, 국내 콘텐츠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3)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4. 1.

조사한 결과 ‘자금 조달 및 운용 등 자금관리’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작비용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주체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콘텐츠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연계산업의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편으로, 콘텐츠산업의 총 산출액은 2019년 기준 63조 9,447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7.3% 증가하였고, 타 산업 생산 유발액은 2019년 기준 36조 14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2.8% 증가하였음.⁵⁾

또한, 콘텐츠산업의 청년 종사자(40대 미만) 비중은 78.3%로서, 타 업종 평균 33.9% 대비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⁶⁾

특히 콘텐츠산업은 기술이나 기계가 대체 불가능한 창의력 기반의 노동집약형 산업이므로 미래의 청년 일자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3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24. 6.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콘텐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2024. 2.

6)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콘텐츠 세제지원 방안」, 2023. 8.

당시 투자 유인 효과에 비해 조세지출 증가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세제지원과 무관하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⁷⁾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⁸⁾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영상콘텐츠 외 공연, 전시, 음악과 같

7)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8)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장르로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게임, 융복합, 만화, VR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은 다른 문화산업 관련 전문회사와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